

※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상품설명서(약관 요약본)※

상품명	해외장기체류자보험(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 형)
가입목적	해외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치료 실비를 보상함 (처방약 값 포함)
가입기간	4~12개월(만기 전 연장 가능)- 병원비 청구가 많으시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보험료	일시 납(보험만기 시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)
보상한도	가입기간 동안 사고의 제한 없으며, 상해,질병치료 의료비를 한 사고당 가입금액만큼 보상
보상처리방법	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선 지불 후 보험사 청구 (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능)

※ 가입시 알아두실 중요 사항 ※

- 1) **보험가입시 청약서(보험계약서)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.-미고지시 보상을 못받을수 있습니다**
- 2) **중도해지:** 계약의 효력을 중도에 해지하실 경우 보험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급 됩니다.
1개월:20% 2개월:30% 3개월:40% 4개월:50% 5개월:60% 6개월:70% 7개월:75% 8개월:80% 9개월:85%10개월:90% 11개월:95% (각 개월에 해당하는 환급율 금액만큼 차감하고 환급처리 됩니다.)
- 3) **비례보상:** 실비보험 가입 시 중복 보상 되지 아니하며, 비례 보상 됩니다 (예: 타보험사 40% 장기체류보험 60%)
- 4)피보험자가 여행도중(해외생활중)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중, 보험기간만료시 종료일로부터 **90~180일까지**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, 수술비, 간호 비용,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(국내에서 발생한 상해및 질병은 보상불가.)(12개월가입-180일보장 12개월이하가입-90일보장)
- 5) **국내 진료 기관 이용 보상 한도** (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의 의사 소견서원본이 있어야 보상 가능)
급여보장 입원시 20%본인 부담이며, 통원 및 처방 조제시 1~2만원 또는 20% 중 큰금액을 차감한 금액
비급여보장 입원시 30%본인 부담이며, 통원 및 처방 조제시 3만원 또는 30% 중 큰금액을 차감한 금액
- 6) 척추지압술(Chiropractic, 추나요법 등)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며,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**US\$1,000** 한도로 보상가능 (단, 한의원에서 치료받더라도 한약처방은 보상안됨.)
- 7) **해외장기체류자 (유학생) 보험에서는 휴대폰 도난과 파손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.**
- 8) **자동차사고의 경우 현지 자동차 보험이 우선 처리 대상이며, 현지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상불가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 (뺑소니사고의 경우 경찰확인서 첨부)**

※ 보상되지 않는 손해 ※

- 비뇨기계 장애 요로감염(Urinary Tract Infection) 비뇨계의 기타질환:N39, 상세불명의 요실금:R32,
- 직장 또는 항문 질환 (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, 치질,치핵:I84, 항문 질환K60-K62)
- 치과 질환은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보상 됩니다.

*질병: 발치(유치발치제외) 및 잇몸질환 등 제한적으로 보상 (스켈링, 치석제거 제외)

충치 치료 후 아말감, 레진 크라운 금 등으로 덮어 씌우는 보존 치료비는 보상 불가 합니다.

*상해:상해로 인한 치아 파손의 경우 본치아(치료받지 않은치아)의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.

(아말감,레진, 크라운, 금니등 치료받은 치아가 떨어져 치료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.)

- 앰블런스 비용 및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급차(911 등)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일반적인 검사나 예방 접종: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함
- 기왕증: 보험 가입 이전에 수술 및 치료 받은 경력이 있거나,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해외에서 재발 하여 치료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
-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,정신과 상담(F04-F99) 및 불면증등 ,음주로 인한 상해 및 질병 (실신, 기억상실등)
-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렌즈, 보청기, 목발, 팔걸이, 재활치료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
- 임신이나 출산(제왕절개 포함)에 관련된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은 보상되지 않음
- 배상책임-피보험자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 부분은 보상 되지 않음
-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, 점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
- 비만, 발기부전, 불감증, 단순 코골음, 단순포경
- 외모개선목적의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의료비(쌍꺼풀수술,코성형수술,유방확대 축소술,지방흡입술,주름살제거술)
- 영양제, 종합비타민제, 호르몬투여, 보신용투약, 진자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 술
-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,인간면역바이러스(HIV)감염으로 인한 치료비
- 고의적 사고 ? 피보험자의 자살, 선천성 뇌질환, 심신상실 , 불법적 사고(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,폭력, 범죄 등) - 전쟁, 교전, 혁명, 내란, 반란, 폭동, 소요 등 현지의 소요사태에 의한 손해 또는 군사업무 수행 중 손해
- 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에 의한 손해
- 인수제한국가 :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제한 및 금지국가
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※

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

담보명	지급사유
상해사망· 후유장해 (해외장기체류)	해외체류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시 가입금액 전액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
질병사망및80%고도후유장해	해외장기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%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
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	피보험자가 조난, 사망, 14박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※ 비용의 범위 ① 수색구조비용 ② 항공운임 등 교통비(수색,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비-2명분 한도) ③ 숙박비(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- 2명분/1명당 14박 한도) ④ 이송비용(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, 간호사의 호송비)
해외장기체류 상해_해외의료실비보장	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
해외장기체류 질병_해외의료실비보장	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
해외장기체류 상해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	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○입원실료,입원제비용,입원수술비를 보상(의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보상) ○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외래 및 처방· 조제비를 보상(병원규모별 1~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)
해외장기체류 질병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	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○입원실료,입원제비용,입원수술비를 보상(의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보상) ○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외래 및 처방· 조제비를 보상(병원규모별 1~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)
해외장기체류 상해비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	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○비급여 입원실료,입원제비용,입원수술비를 보상(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70%보상) ○상급병실료차액 :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 (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 ○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비급여 외래 및 처방· 조제비를 보상(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)
해외장기체류 질병비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	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○비급여 입원실료,입원제비용,입원수술비를 보상(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70%보상) ○상급병실료차액 :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 (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 ○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비급여 외래 및 처방· 조제비를 보상(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)
해외장기체류 3대비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	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1. 「도수치료· 체외충격파치료· 증식치료」 :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치료, 증식치료 (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), 350만원/50회 한도 2. 주사료 : 주사료, 항암제, 항생제, 희귀의약품, 영양제, 비타민제 (단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정하는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일 경우)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, 250만원/50회 한도 3. 자기공명영상진단 (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), 300만원 한도

※ **보험종목의 특성상 상세 보상범위 및 담보별 확장담보, 특별약관은 반드시 청약서 및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**
 ※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.
 ※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, 납입기간,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.

*** 상해 :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에 의해 몸 손상(유독 물질 일시 흡입도 포함)**

1) 상해 사망, 후유 장애 (Death or Disability) **(15세 미만은 사망 담보를 가입할수 없습니다)**

- 여행 중(해외생활 중)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애 보험금 (후유 장애 지급률 표에 따라 100% ~ 3% 까지)을 지급함 (단, 사고일로부터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)

1-1) 천재상해 사망, 후유 장애 (Natural Disaster Death or Disability)

-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애 보험금 (후유 장애 지급률 표에 따라 100% ~ 3% 까지)을 지급함 (단,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)

2) 해외상해의료비 (Accident Medical Expenses)

- 피보험자가 여행도중(해외생활 중) 사고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~18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, 수술비, 간호 비용,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

2-1) 천재상해의료비 (Natural Disaster Accident Medical Expenses)

-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~180일까지의 진찰비, 수술비, 간호원 비,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

*** 질병 : 몸 내부의 일어난 병(감기,두통,피부병,복통 맹장등..)**

1) 질병사망 (Sickness Death) ->기본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일천만원 이며, 추가담보 가능 합니다. **(15세 미만은 사망 담보를 가입할수 없습니다)**

2) 해외질병의료비 (Sickness Medical Expenses)

- 여행 중(해외생활 중) 발생한 질병(현지의 유행병 및 풍토병 포함)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발생한 치료비 실비로 지급함 (단,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~180일까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)

*** 상해 및 질병 국내 치료비**

1)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보장기간

- 현지에서 치료 중 보험 기간이 종료 되고 귀국하여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시 보험 종료일로부터 **90~180일까지** 보장 (보험기간 12개월가입-180일보장 12개월이하가입-90일보장)

*** 특별비용 (Rescuer' s Expenses)**

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

- 수색구조비용: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,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.

- 항공운임 등 교통비: 피보험자의 수색,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(그 대리인 포함) 2인의 현지 왕복교통비. (피보험자가 2주 이상 입원한 경우)

- 숙박비: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, 1인당 14일 한도로 보상

- 이송비용: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 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, 간호사의 호송비

- 기타 제압 비용: 피보험자, 법정상속인의 출, 입국 절차비용, 통신비 등(10만원 한도)

*** 배상책임**

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**법률상의 손해배상금** (본인부담금 1만원)

아래 사항은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

- 계약자,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

-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

-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

- 항공기, 선박, 차량(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), 총기(공기총은 제외합니다)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

*** 보상처리 과정 및 구비 서류**

-보험금 청구서, 의사소견서, 병원비 영수증 및 약값영수증,여권사본,한국출국시 여권사증(도장)부분, 외국입국시 여권사증(도장)부분

※ 비용 납부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여야 하며,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은 보상 불가 합니다.

-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 통장으로 송금처리